

# 이리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리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유아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이리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라 한다.

(이하 ‘본원’이라 함)

제3조(위치) 본 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학곡로 57에 둔다.

## 제2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 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 원의 학기는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한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방학 및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
4. 재량휴업일: 이리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정하는 휴업일
5. 기타휴일: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원아정원) 본원의 원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학급당 학급편성 기준에 따른다.

##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등

제9조(교육내용) ①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 본원은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과 본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③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 돌봄활동이 적절히 어우러진 놀이와 활동으로 운영 한다.

제10조(수업일수 등)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교육과정은 년 최소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나눈다.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한다.
  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 체험학습을 포함한다.
  4.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는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원장은 「유아학비 지원계획」과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준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1조(교육시간) 본원은 교육과정(1일 4시간~5시간)이후부터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일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

## 제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지도

제12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교무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훈육)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거나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

제14조(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관할청의 지침에 준한다.

## 제6장 입학 · 편입학 · 휴학 · 재입학 · 전·입학 · 퇴학 · 자퇴· 수료 · 졸업 · 표창

제15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도 포함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3월 초를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발생한 경우나 총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제17조(입학결정)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유아모집 지침에 따라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18조(편입학) 공·사립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원으로 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19조(휴학)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원장의 허가하에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복학처리 또는 학적 이동 처리한다.

제20조(재입학) 본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 중 희망자에 한해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제21조(전·입학) 유치원 원아가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전입 및 전출하고자 할 때 유치원장은 허가한다.

제22조(퇴학)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제23조(자퇴)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하고자 하는 유아는 자퇴원서를 작성한 후 처리한다.

제24조(졸업) 원장은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유아의 졸업을 처리한다.

제25조(수료) 원장은 만3-4세 원아 중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7장 시상

제26조(시상)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 할 수 있다.

## 제8장 수업료 ·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제27조(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감독청과 협의·결정하고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와 협의·결정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유치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세부 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9장 규칙 개정

제28조(규칙 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29조(규칙 개정 예외) 교육감(장)으로부터 인가된 긴급하고 중요한 유치원 규칙 개정 요구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학교 전자문서로 접수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1. 본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칙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

### 부칙 (2021.00.00. 이리송학초-0000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일(2020년 0월 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